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 공개**

1. 구역(범위) : 제기동 1145-8번지 일대



※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으로 사전검토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 수: 388명(번호 부여 발급 요청일 기준)

2.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 성 명 : 김전일
- 연락처 : 010-6209-8779 (사무실 : 02-928-4080)

3.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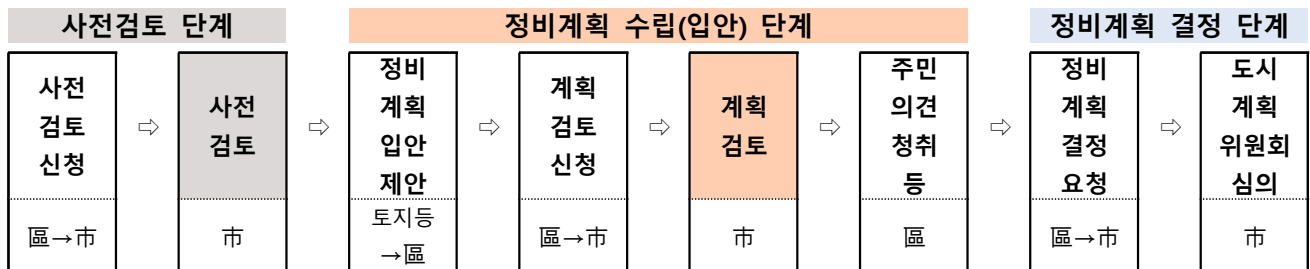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제기동 1145-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 제 2025-1호
번호부여일자	2025. 10. 24.
확인(인)	

4. 공개 장소

- 동대문구 홈페이지 >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 번호부여 요청 구역의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5. 기타 안내사항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 ‘입안제안 동의서’는 추진주체에 발급된 동의서(첨부1)만 유효합니다.
-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첨부3)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필지 또는 건축물, 지상권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되, 공유자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도 동의로 처리 가능합니다.

※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내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이 추진됩니다.

구분		행위제한	권리산정기준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준	사전검토 신청일 (區→市)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해당 내용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1팀(02-2127-4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제기동 1145-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 제 2025-1호
번호부여일자	2025.10.24.
확인(인)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유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지	소재지 (공유여부)			면적(m ²)
		(계필지)			
		()			
	건축물	()			
		소재지 (허가유무)			동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 ※ 재건축 사업 대상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m ²	
동 의 내 용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1.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 ①과 ②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의제사항				자필로 동의 기재 <①, ② 중 한 곳만 표기>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동의
	②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충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동의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제안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자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동대문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 동의 철회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 유 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다만, 각 공유자가 각각 관련서류를 갖춰 공유자 모두 제출 시에도 인정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 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 입안 동의서 또는 반대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최종 제출한 내용으로 처리되며, 본 철회서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함 (예시 : 입안 제안 동의서 제출 → 반대 제안 동의서 제출 → 반대 동의로 처리) (예시 : 입안 제안 동의서 제출 → 반대 제안 동의서 제출 없이 철회서만 제출 → 의견 미개진으로 처리) 동대문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 사본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관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입안 제안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반대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제기동 1145-8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 제 2025-1호
번호부여일자	2025.10.24.
확인(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유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건축물	()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 ※ 재건축 사업 대상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반대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동대문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 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관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 반대 철회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유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²)
		(계 필지)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다만, 각 공유자가 각각 관련서류를 갖춰 공유자 모두 제출 시에도 인정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 소재지를 포함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반대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 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 입안 동의서 또는 반대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최종 제출한 내용으로 처리되며, 본 철회서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함 (예시 : 입안 동의서 제출 → 반대 동의서 제출 → 반대 동의로 처리) (예시 : 입안 동의서 제출 → 반대 동의서 제출 없이 철회서만 제출 → 의견 미개진으로 처리) 동대문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 사본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입안 제안 반대 철회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